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. 5. 18 선고 2017가단47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5. 11.

판결 선고 2017. 5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3475분의 990 지분에 관하여 2009. 7. 2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미화

별지